

2025년 제1회 서해어업관리단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서해어업관리단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 ~'26.9.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목포)

※ 정원의 준수가 한정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어 통·번역 지원■ 어업교섭 등 관련 업무 지원■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3. 근거 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제10호
-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제10호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 라.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 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일반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미적용

나.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6.11. 또는 6.12.) 기준]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②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경력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 불가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④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⑤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중국어 관련 통역 및 번역 업무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 관련분야 학위 : 중국어 관련 학과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경력①/경력②/경력③, 학위①/학위②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6.11 또는 6.12.)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 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 항목(소통·공감, 혁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과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중국어 구사능력 심사)' 등을 평가(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 시 중국어 구사능력 심사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예정일
'25.05.09.(금) ~05.23.(금)	'25.05.19.(월) ~05.23.(금)	'25.05.30.(금)	'25.06.11.(수) ~06.12.(목)	'25.06.26.(목)	'25.7월

※ 시험공고,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접수처

- 접수일시 : '25. 5. 19.(월) ~ 5. 23.(금) 09:00~18:00(토·일요일은 제외)
- 접수처 :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1층)
(우편번호 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죽교동694)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공고문 최하단 '봉투표지 양식' 작성 후 부착)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지함.)

다. 제출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공통](#))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통](#)),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첨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면제 대상이며,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증명서 첨부
-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통](#))
※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관련 근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내용만 기재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통](#)), A4용지 각 1매로 작성)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공통](#)), A4용지 각 1매로 작성)
- ⑥ 자격 요건 경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명서 1부. ([공통](#))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⑦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공통)
- ⑧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공통)
- ⑨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공통)
- ⑩ 경력(재직)증명서 1부(발급기관 자체 증명서 제출, 공통)

※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일, 발급자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특히 “담당업무” 기재 시 “중국어 통역 또는 번역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유의사항 내용이 모두 기록되지 않거나 별도 양식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⑪ 4대보험(고용·국민연금·건강·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공통)
(예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등)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⑫ 응시자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8호 서식) (공통)

라.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6. 27. ~ '25. 7. 26.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6.9.30.까지

※ 임용일은 2025.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기타 수당 별도 지급)

구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급	66,591천원	31,95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난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아.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자.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차.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01. 홈택스 로그인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 증명
- 폐업사실 증명
- 납세증명 서(국세·한국증명)
- 납부내역 증명(납세사실 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차산관리계좌와 가입증)
- 부기기적 세 과세표준증명
- 부기기적 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충원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증명
-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 청약抽選한자증명 및 과세특례)

- 카.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협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 타.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과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과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입법 개정 추진 중인바, 동법 개정시 그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 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과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지역)	근무예정부서						
서해어업관리단(목포)	어업지도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 통·번역 지원 ○ 대내·외 국제행사, 외빈방문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지원 ○ 기타 공무원 일반 복무규정상의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분석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에 대한 통·번역 능력 및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이해 ○ 한·중 어업협정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해 ○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에 관한 전반적 이해 						
응시자격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채용분야 : 중국어 통·번역 및 불법어업지도단속 지원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경력 </td> <td style="width: 85%;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 불가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학위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④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중국어 관련 통역 및 번역 업무 [관련분야 학위] 중국어 관련 학과 </td> </tr> </table>	경력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 불가	학위	④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중국어 관련 통역 및 번역 업무 [관련분야 학위] 중국어 관련 학과	
경력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 불가						
학위	④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중국어 관련 통역 및 번역 업무 [관련분야 학위] 중국어 관련 학과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25.6.11. 또는 6.12.)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분야/코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응시자 미기재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홍길동 (인)	1990. 1. 1.	
응시자격요건	<input type="checkbox"/> 경력① <input type="checkbox"/> 경력② <input type="checkbox"/> 경력③ <input type="checkbox"/> 학위④ <input type="checkbox"/> 학위⑤ ※ 해당요건 반드시 1가지만 체크(V)			

□ 작성목록 및 편철순서 [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필수 / 별지서식1) · 경력증명서에 제출된 것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정부수입인지 첨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이력서(필수 / 별지서식2)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서식3)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서식4)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자격 요건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필수 / 별지서식5)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6)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주민등록 초본(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필수) · 별지서식 7호 사용 가능 · 사무실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000 ('12.1.2~'13.1.2):12월 ·000 ('14.1.2~'17.1.2):24월
10. 응시자 체크리스트(필수 / 별지서식8)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원서(원본)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본인은 서해어업관리단 일반임기제(행정주사보)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주사보 /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응시자격		<input type="checkbox"/> 경력①	<input type="checkbox"/> 경력②	<input type="checkbox"/> 경력③	<input type="checkbox"/> 학위④	<input type="checkbox"/> 학위⑤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수입 인지는 별도 첨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주사보 /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응시자격		<input type="checkbox"/> 경력① <input type="checkbox"/> 경력② <input type="checkbox"/> 경력③ <input type="checkbox"/> 학위④ <input type="checkbox"/> 학위⑤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⑤ 정부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7급 7,000원)를 부착하되, 여러 매 (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의 경우 별도 첨부)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에서 구매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 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으로만 심사하며, 응시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다른 자격요건으로 심사하지 않음.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 응시원서에 기입한 응시자격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응시자격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심사

< 별지서식 제2호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행정주사보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응시 자격 요건	<input type="checkbox"/> 경력 ①	<input type="checkbox"/> 경력 ②	<input type="checkbox"/> 경력 ③	<input type="checkbox"/> 학위 ④	<input type="checkbox"/> 학위 ⑤	성 명

나.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00.00.00.~00.00.00.(육아휴직)		과장 (0급)	(예) 중국어 통역, 번역 구체적으로 기재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우대요건' 경력란이 없으면 기재 불필요)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 · 학위종류 · 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별지서식 제3호 >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직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업무수행의지, 직무수행방향 및 전략 등을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학위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발급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의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자료 사본**
- (4)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공무원 채용의 제한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 별지서식 제7호 >

경력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 사용하여 제출

근무업체	상호 (전화)	(연락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예)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중국어 통역 또는 번역 업무	근무형태	(예) 상근/비상근, 주4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여부	

위 사람이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상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 (인)

경력확인 가능한 인사(발급자)부서 전화번호 :

메일주소 :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응시자 체크리스트

※ 점검항목에 대해 확인여부란에 “√” 또는 “해당없음” 표기

점검항목	확인여부
1. 채용직급, 담당업무,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보수수준을 확인하였습니까?	
2.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u>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응시자격요건을 1개 선택하였습니다</u> 니까?	
3. 이력서에 관련되는 모든 경력, 학위, 표창(상훈), 자격증을 빠짐없이 기재 하였습니까?	
4.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해 <u>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u> 니까?	
4-1. 첨부된 경력증명서상에 <u>근무기간, 담당업무(통번역 수행 명시), 주당 근무 시간,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기관 직인이 표기되었습니다</u> 니까?	
5.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학위에 대해 <u>학위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u> 니까?	
6.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에 대해 <u>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u> 니까?	
7. 첨부서류 중 외국어로 표기된 증명서가 있는 경우 <u>한글 공증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u> 니까?	
8.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제출서류가 빠짐없이 포함되었습니까?	
8-1. (인), (서명)이 표기된 곳에 빠짐없이 자필서명 등 하였습니까?	
9.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거짓 없이 기재하였습니까?	

2025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곁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등 ()

응시직급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응시분야
중국어 통·번역 및 어업지도단속 지원 등

받는 사람

우) 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TEL : 061-240-7924

**[2025년 제1회
서해어업관리단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증]**